

의안번호	2204125
의 퇴 인	정혜경 의원
회 답 일	2024.10.7.
추계번호	24B39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적용 범위)	<삭 제>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제2항)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4조의2(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삭 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적용 범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안 제14조의2(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	
3	안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 상세 사유

- (안 제11조 및 제14조의2) 현행 「근로기준법」은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구 분	적용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개정안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가로 하여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지원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곤란
 - 또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지원 수준 및 규모 등을 검토하

기 어려우며, 지원 수준 또한 예산의 범위 내로 유동적이므로 추가재정소
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8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¹⁾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이하 “초단
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²⁾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³⁾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초단시간 노
동자에 대한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표 2]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현행법	개정안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u><삭 제></u>

- 1)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
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
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을 경우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함
 - － 해당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할 경우 대체근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수” 및 “임금”에 관한 정보가 필요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지원 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2023년 기준 160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표 3] 15시간 미만 근로자 현황

(단위: 천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근로자 수	904	960	1,095	1,302	1,304	1,512	1,577	1,600

자료: 통계청, 2024년 9월 11일 접속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